

울산지방법원 2017. 4. 20 선고 2016가단1949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4. 6.

판결 선고 2017. 4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46,205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46m² 지상 판넬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, 위(가) 부분 46m²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

판사배용준

별지